

1. 머리말

여러 집단의 利害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유통시장의 문제를 인위적·제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행 石油製品의 유통구조가 그간 여건의

石油製品 유통구조 개선방안

변화에 따라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모순과 이에 따른 관계집단의 불만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있는 사람들이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나, 모든 제도가 각기 나름대로의 배경과 이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행정력에 의한 제도의 개선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다소간의 부담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이익을 보는 집단보다 부담이 증가되는 집단의 불만과 반발은 보다 강한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모순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無事安逸이며, 다소간의 반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발전이라 믿기에 각자의 이해와 양보를 구하면서 보다 나은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을 때와 현실을 비교해 보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총생산·국민소득·전력소비량·차량증가등 양적 변화는 물론이며, 산업구조·국제환경 등 질적·경제외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운용방향도 계속 변화해 왔으며, 또한 변하고 있다. 60년대 우리경제의 규모가 작아 세계의 관심 밖일 때에는 政府主導의 경제계획과 각종 지원과 규제를 통한 경제육성정책의 추진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능하였다. 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적절한 통제와 조장을 가하는 것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이러한 결과가 오늘날의 성장의 밑거름을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기능의 분화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政府主導의 경제운용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장점과 특성을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기 쉬웠으며,

張大星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수급과·행정사무관〉

경제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를 수 없는 행정능력의 한계성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운용은 제도권내에서의 경쟁체한요소를 가능한 한拂拭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반논리가 특정부문에 적용될 때에는 부문의 특수성에 따른 적용상의 한계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石油製品의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石油製品이 가진 특수성 및 유통산업이 가진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石油製品이 각종 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主宗에너지源인데 반해 全量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石油賦存의 지역적 偏在과 主輸入지역의政情불안에 따른 石油危機의 상존등으로 정부가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특성과, 이에 따라 精製業의 협가제나 原油도입에 관한 통제와 정부비용의 추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油種間의 가격조정과 가격고시등 일시에 허물어버릴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와 이유가 있으며, 精製產業이 고도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大企業에 의한 경영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유통산업은 상대적으로 劣位에 처할 수 밖에 없으므로 精製業과 유통업간에는 소위 경쟁의 원리보다 분배의 측면에서 大企業으로부터 중소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체업부문의 양보를 요구하게 되는 현실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아래 오늘날 우리나라의 石油製品유통구조의 현실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石油製品유통시장 여건의 변화

石油製品유통시장에 있어 1981년은 커다란 변혁의 계기가 된 한해였다. 이 해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계기는 3월 14일 소위 代理店·注油所등의 定數制폐지와 4월 1일부터 시행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법률의 실시 및 이에 따른同年 8月의 대리점과 주유소간의 공급계약내용에 관한 公正去來審議委員會의 의결이라 하겠다.

1981년 3월 14일 이전에는 1976년 2월 국무총리지시로 시달린 대리점·주유소 및 충전소의 신규허가제방침에 의해 石油販賣業의 협가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산업성장과 차량증가에 따른 石油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石油販賣業者는 비교적 용이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성장개발저해요인개선작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경제의 각분야에 있어 경제체한적 요소를 과감히 불식한다는 원칙하에 대리점·주유소등의 定數制도廢止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石油판매업소수의 급격한 증가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었고, 1979년 제2차 석유위기 이후 石油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石油소비절약 노력에 따른 石油製品 수요증가의 둔화 내지 감퇴는 石油판매업계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계속된 가격조정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가격상승요인을 가능한 한 축소하기 위하여 유통마진은 거치 내지 최小限의 인상만을 인정하여온 결과 마진율의 상대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기야는 類似揮發油의 별명이라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1981년 4월 公正去來法의 실시 이전에는 주유소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기간은 통상 10년 이상이었으며, 계약기간중에는 他社製品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고 있어 소위 판매계약화가 이루어졌으며, 각 精油社는 계열대리점과 주유소를 지원·육성함으로써 他社와의 경쟁을 위한 자기판매조직을 다져 나갔다. 그러던중 소위 公正去來法이 실시되자 유통업계(주유소)에서는 경쟁이익의 享有를 위하여 1981년 5월 25일 同 공급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실에 진정을 제출하였으며, 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서는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한 不公正去來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발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욕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공급계약기간은 1년이내로하고 계약기간중 他社제품의 판매금지특약을 삭제하는등의 시정을 요하는 심의·재결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로 주유소업계는 공급계약 대리점의 변경 및 복수거래를 무기로 구입가격의 할인 및 결제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냄으로써 경쟁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精油業界的 사정을 살펴보면 1980년 雙龍精油 60千배럴 규모의 정제시설 가동 및 1981년 湖南精油의 150千배럴 증설로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난데 비해 1979년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소비량은 거의 담보상태에 있어 가동율이 크게 저하된 반면 유통업계는 요구의 증대로 판매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종래의 판매전략에 대한

수정이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各 精油社는 직영 판매조직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자영대리점에 대한 지배와 단속의 강화로 판매조직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진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精油社의 변화는 유통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準直營 代理店 및 주유소의 확대라는 脱法行爲인 것으로 되어 종래의 지원·조장의 화합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결과등으로 발생한 유통상의 문제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3. 注油所 허가관리문제

(1) 許可管理 현황

영업허가의 과도한 제한은 憲法上 보장된 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허가권의 이권화로 과다한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방만한 허가관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유통업계의 零細化와 경영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유통비용의 증대와 소비자부담의 가중을 가져오게 된다.

1981년 3월 14일 주유소등의 신규허가여제방침 해제 이후 주유소의 허가관리는 石油事業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市·道지사고시에 의거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종전의 허가여제방침에 대한 반작용등으로 지역제한과 거리제한을 계속해 온 서울특별시와 定數制를 유지해온 江原·濟州의 대부분의 지역은 주유소수의 급격한 증대를 보였으며, 특히 京畿·忠南北·全南北·慶南北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表-1 참조)

한편 그간의 판매물량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별도의 판매조직을 가진 LPG·溶劑·아스팔트 및 윤활유등을 제외한 石油製品의 수요는 1981~87기간중 6.3%의 증가에 그쳤으나, 차량 증대 및 산업체有煙炭대체와 發電用 B-C油의 감소등으로 수요의 輕質化추세가 가속되어 대리점 및 주유소의 판매물량은 각각 68.4%와 127.0% 늘어났다.

그러나 注油所數의 급격한 증대로 주유소당 판매물량은 1983년과 1984년의 경우 1981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그 결과 유통마진의 인상요구 및 유사회발유의 범람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1985년부터 정부에서는 유사회발유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各 市·

〈表-1〉 市道別 注油所 증가추이

(단위: 個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서울	262	270	271	271	270	255	252	278
釜山	112	113	121	137	154	167	179	178
大邱	66	84	85	90	98	111	116	115
仁川	36	39	51	59	63	64	63	66
光州	30	35	36	37	37	38	39	36
京畿	157	158	215	266	346	364	358	389
江原	110	111	126	147	145	156	161	160
忠北	75	85	100	119	131	126	127	153
忠南	139	147	209	231	247	250	272	292
全北	89	91	93	138	163	159	175	205
全南	86	98	143	163	177	165	166	191
慶北	139	176	205	225	264	276	263	282
慶南	131	152	175	196	273	261	293	291
濟州	16	17	24	26	27	29	28	30
計	1,448	1,576	1,853	2,105	2,395	2,421	2,492	2,666

註: 年度末 營業基準

道의 고시기준 개정으로 주유소간의 거리제한규정을 두어 현재에는 거의 全市·道가 허가기준으로 既存注油所와 직선거리 1~3km 이상일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유소수의 증가추이를 상당수준 둔화시킬 수 있었으며 주유소당 평균판매물량도 점진적인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表-2 참조)

(2) 現行制度의 문제점

현행 정부고시가격제도에서 石油製品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는 적절한 허가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존 石油판매업자는 보다 적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油公·京仁 등 비교적 판매망 확보가 충실히 정유업체는 긍정적이나 雙龍 등 판매망 확보가 미흡한 업체와 특히 日產 60千배럴의 原油처리 및 34千배럴의 重質油分解施設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極東石油의 경우, 생산제품의 全量을 대리점·주유소등 石油판매업자를 통해 팔아야만 하는 반면, 기존 판매조직이 극히 취약하여 판매업에 대한 허가관리강화시 적정판매망 확보가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행 주유소간의 거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시·도고시기준에 의한 허가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이기는 하

〈表-2〉 유통단계별 販賣物量 추이

(단위 : 千·배럴)

	1981	1983	1985	1987
• 총 판매량	165,535 (100)	167,913 (100)	166,290 (100)	176,035 (100)
• 정유사직매	117,307 (70.9)	114,968 (68.5)	99,159 (59.6)	94,815 (53.9)
• 대리점판매	48,228 (29.1)	52,945 (31.5)	67,131 (40.4)	81,220 (46.1)
-직판매	21,395 (12.9)	21,728 (12.9)	26,776 (16.1)	32,780 (18.6)
-부판점	7,310 (4.4)	6,960 (4.2)	6,505 (3.9)	4,728 (2.7)
-주유소	19,253 (11.8)	24,257 (14.4)	33,850 (20.4)	43,712 (24.8)
• 주유소수	1,576	2,105	2,421	2,666
-평균판매량	12.22	11.52	13.98	16.40

註 : () 내는 구성비, LPG,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 제외.

나, 그 법률적 체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과거 행정위 주의 권위주의적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규적합성이 다소 경시되는 경우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民主化의 추진과 더불어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될 것이다.

현행 거리제한에 대한 大法院판례를 살펴보면, 상반된 입장이 있다. 즉 1974년 11. 26(74. 누. 110) 大法院판결에서 市·道知事が 주유소이전허가신청에 대해 기존 주유소와의 상호간거리를 1km 이상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內務部長官의 지시에 따라 불허가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주유소허가가 罷束裁量에 속한다 할지라도 허가신청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판단 아래 일정한 내부적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說示하였다.

그러나 公衆沐浴場영업허가에 관한 유사판례에서는 公衆沐浴場法에 의하면,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환경과 설비의 합리적제한을 두어 목욕장의 설치장소·시설 또는 구조의 적절만이 허가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거리제한과 같은 분포의 적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가사 分布의 적정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않은 이상 분포의 적정이라는 이유로 현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963. 8. 31 63누 101).

위의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현행 石油事業法 제5조에서 인적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同제12조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物의기준으로서 시설기준인 주유기·저장시설등을 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위임에 의한 시·도지사 고시사항도 시설기준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분포의 적정과 같은 권리의 제한은 공공복리의 필요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憲法 第32條 第22項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는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다.

(3) 외국의 예

가. 日本

日本의 경우 방만한 허가관리로 인하여 그 경영상의 문제점 및 영세성은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여 우

리의 許可政策管理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1986년의 경우 日本의 주유소당 휘발유판매량은 월 280드럼에 불과한 바, 日本의 수요구조상 등유와 경유의 수요의 합이 휘발유수요의 1.4배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987년중 주유소당 평균판매물량이 월 1,087드럼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등·경유의 全需要를 주유소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하여도 월 700드럼이 미달되는 실정이다(表-3 참조)

日本의 경우 주유소설치에 대하여는 指揮發油販賣業法을 두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유소증가억제를 위하여 소방법에서 지역별로 거리제한을 두는 한편, 휘발유판매업법 제6조 제2항에서 通商產業長官은 주유소등록신청시 그 지역의 주유소당 휘발유 평균판매물량이 通商產業省令으로 정하는 수량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를 유예하거나 설비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유소의 증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별도의 石油販賣業法은 없으나, 도시개발과 관련한 건설허가, 도로교통소통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 및 防災와 관련한 판매허가 등을 통해 주유소설치를 규제하고 있는바 실제에 있어 주유소증가 억제를 위한 정부개입은 어느나라보다 강력하다. 즉 주유소의 신축시에는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 원칙에 따라 石油企業의 경우 종전소유 또는 공급주유소 3개를 폐쇄하여야 1개소의 신규허가나 신축이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3개의 주유소를 매입·폐쇄하여야 가능하다.

다. 英國

英國의 경우도 立地·건설·설비배치 및 防災등과 관련하여 주유소설치를 규제하고 있는바 현재 설비과잉으로 지역내 휘발유평균판매량이 연간 2,000㎘ 이상인 경우 라야 주유소 신규설치가 가능하다.

(4) 對策方案

일단 영업허가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經濟主體로서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기득권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허가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진요하다.

石油販賣業허가는 현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위임사무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地方自治制 실시와 관련하여 地方移讓事務로 하는 법령개

〈表-3〉 日本의 주유소수 및 휘발유판매량 추이

	1981	1983	1985	1986
주 유 소 수	59,272	59,329	59,082	58,729
판매량(월 / kℓ)	49.9	51.4	54.1	55.5
적자주유소(%)	42.3	49.6	48.3	36.1

정이 필요시된다. 이때 적정허가관리를 위하여 日本의 경우와 같은 基準판매물량의 설정 또는 분포의 적정을 위한 법적 근거설정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리점은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교통망의 발달등에 따른 저장기능의 약화로 혼가기준중 저장시설기준의 일부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역시 物量基準의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유업체간의 호양에 의한 후발 정유업체의 적정판매망 확보방안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精油社의 유통시장 지배강화문제

(1) 問題의 발단

1981년 대리점·주유소 및 충전소의 신규허가 억제방침 해제시 精油5社는 6개의 대리점과 90여개의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신규허가 억제방침의 해제가 검토되자 기존 유통업계에서는 정유사가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기존 유통시장을 잠식해 옴으로써 自營業者의 판매시장 위축과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고, 또 시기적으로 雙龍精油와 湖南精油의 신·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으로서 精油業界의 가동율향상을 위한 시장확보경쟁의 深化가 우려되던 때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 신규허가억제방침해제의 보완책으로 1981年 3月 14日 石油事業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精油會社의 신규 석유대리점 및 직영충전소의 취득금지와 정유회사 직영 대리점의 신규주유소 취득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調整命令을 발하였으며,同年 3월 24일 精油會社 및 그 직영대리점이 기준대리점이나 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등으로 사실상 직영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그러나前述한 바와 같이, 공급계약기간의 단축 및 공급계약기간 중 他社제품의 취급금지특약을 배제하는公正

〈表-4〉 直營 및 自營대리점의 판매실적

(단위 : 천 배럴)

	1981	%	1983	%	1985	%	1987	%
총 판 매 량	48,228	100	52,945	100	67,131	100	81,220	100
직 영	11,912	24.7	17,736	33.5	24,436	36.4	27,688	34.1
자 영	36,316	75.3	35,209	66.5	42,695	63.6	53,532	65.9

去來審議委員會의 심결이 있고 유통업계의 정유사에 대한 거래조건개선요구가 증대되는등 기존 시장구조의 변화가 커지자 정유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직영판매조직의 강화와 유통시장에 대한 소위 準直營형태의 조직 확대로 판매조직의 정비와 시장지배강화를 모색해 나가자, 유통업계와의 마찰과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통계상으로도 직영 및 자영대리점의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1981년 24.7%이던 직영대리점의 판매비율은 1985년에는 36.4%로 증대되었다.(表-4 참조).

(2) 關聯業界의 주장

유통업계의 주장에 의하면, 각 정유사는 위의 조정명령에 의하여自己名義로 대리점 및 주유소등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지자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경영이 부실한 대리점을 정유사의 전직 임·직원이나 계열대리점의 임·직원 또는 친지등의 명의로 인수한 후同一 토지 및 시설등에 대하여 假登記 또는 還買條件附소유권이 전등기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 대리점명의로 주유소·충전소등의 신규허가를 받거나 기존 주유소·충전소를 매입하는 방법 또는 直營代理店이 제3자명의로 주유소를 취득하는 방법등으로 동 조정명령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1985년 6월까지 일반대리점인수 9건 및 주유소·충전소인수 133건등 142건에 달하며, 그 후에도 일반대리점 3개사를 추가인수하는등 계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제시는 곤란하나 경영이 不實하던 대리점을 정유사소속 임·직원이나 퇴직사원등이 인수한 후 갑자기 사영주유소를 매입하는등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리점들로서 업계내에서는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유업체에서는 정유사가 고의적으로 「3. 14조정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으며, 다만 기존 대리점이나 주유소중 파산직전의 부실업소에 대하여 그간의外

上去來 및 자금지원등으로 인한 債權의 확보를 위하여 가등기·환매조건부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사례는 있으나 이것은 상거래상의 채권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정유업체는 油公의 三一社(代理店) 준직영화주장에 대하여 1981년 2月 三一社에서 5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자 油公에 특별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油公은 2억원을 추가지원한 후 財務擔當社員 1명을 파견하여 1982년 5월까지 同社의 경영정상화에 협력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부실로 부득이 既存株主의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同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과거 油公 또는 油公계열 대리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조정명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유회사 또는 그 계열대리점의 퇴직사원이 그간의 경험과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석유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것을 不法이라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정유사의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에서 경영이 어려운 事業引受初期나 특정지명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소간의 지원을 더하여주는 것은 경영내부의 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업체는 준직영으로 매도하고 담보 내지 악화되는 업체는 自營이라는 구분기준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양업체의 주장은 각각 一面의 다행성을 가지고 있는 바 현재의 動力資源部 또는 시·도의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복잡한 商事關係에 개입하여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유통업체단체에서도 직영 및 준직영업체도 회원업체이므로 적극적인 조사와 입증이 곤란하고, 기타 개인업체도 일반적·추상적인 주장외에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증명이 어려운반면 相對方側인 정유사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소명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힘든다. 이에 더 나아가서 일부 정유업체에서는 同 조정명령의 타당성 내지 違法性을 거론하면서 이의 폐지

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3) 「3. 14調整命令」의 法的 효력검토

동 조정명령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조계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다소 부정적이다.

(고 석윤 변호사)

명령의 형식이 정유회사에 대한 것이고 送達도 정유회사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직영대리점의 주유소 및 충전소 취득금지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同 명령이 빌하여진 형식에 瑕疵가 있다.

(하 죽봉 변호사)

同 조정명령의 취지가 정유사의 기존주유소등의 取得行爲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위반의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 즉 헌법 제22조(現行 第23條)에서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公共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금지는 公益性의 명분이 없다.

(김 용린 변호사)

石油事業法上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법규상 허가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석유류판매행위를 허용하는 행정행위에 속하나, 피허가자의 판매시설이나 건물·부지등의 소유권·사용권등은 同法上 私權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一般私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주유소의 買入·賃貸등은 石油事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빌하여지는 動力資源部長官의 조정명령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검토컨대 同 조정명령의 근거인 石油事業法 제17조1항에서는 조정명령발동의 전제로 「국내외 石油事情의 변동으로 石油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石油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명령의 대상으로 다시 「石油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을 열거하고 있으나, 정유사의 대리점 및 주유소등의 취득이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명령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憲法上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을 조정명령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도 법조계의 지적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

(4) 同 조정명령의 法制化검토

動力資源部에서는 同 조정명령의 이와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85년 7월 4일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금지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石油事業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青瓦臺經濟秘書室 및 經濟企劃院등 관계기관에서는 개인의 영업자유권의 보장에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法制화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석유협회에서도 법제화보다는 자율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同年 8월 20일 精油社의 직영 및 자영업소에 대한 차별거래행위 철폐 및 유통시장 참여금지이행을 내용으로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문제는 업계간의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하에 이의 법제화는 유보된바 있다.

그러나 그후에도 유통업계에서는 수시로 同立法豫告 내용의 법제화를 전의해오고 있으나 법률의 개정은 한부처의 의사만으로는 불가한 것이며, 입법예고의 취지가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하는 것이므로 이의 법제화는 앞으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向後 대응방안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精油社의 유통시장참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발견할 수 없고, 실제로도 精油社가 직영주유소를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약 3.4%의 직영주유소를 갖고 있는데 비해 日本의 경우는 1986년말 현재 전체주유소의 12.4%에 해당하는 7,302개가 元賣會社所有이며, 美國·英國·프랑스의 경우도 전체주유소의 17내지 30%가 精油社소유이다.

그러나 분배의 正義를 실현함에 있어 機會均等에서 나아가 결과의 평등까지 구현하기 위하여는 대기업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中小流通業界를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3. 14 調整命令」의 법적 효력여부문제를 떠나 同 명령의 상징적 의미내지 선언적 효력을 다함께 인정해야 한다. 즉, 準直營여부의 논란은 불구하고라도 정유사가 대기업으로서 이미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同 조정명령에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同 조정명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自營代理店 및 自營注油所가 설 자리는 훨씬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공감하며, 同 조정명령의 功績과 가치를 인정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兩業界가 함께 적절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同 조정명령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同 조정명령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법규위반에 사실관계에 의한 정유사의 시장지배권을 규제하기는 실제로 곤란하며, 만약에 同 문제로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商事關係內容에 대한 입증과 소명은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문제는兩 업계간의 대화확대와 관계개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바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과거의 불편한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大和合의場에 동참하여 이해와 양보와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5. 商標表示制度 실시문제 검토

(1) 商標表示制度 실시의 필요성

商標表示制度란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회사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精油社가 공급한石油製品만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行政制度나 형사벌을 가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자는 제도이다.

工產品品質管理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진흥청장은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품에 대하여는 그 製造者名·상표·주소·품질내용등을 상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산품은 제조자명과 품질표시를 그 상품에 하고 있다. 그러나 石油製品은 액체상태로 용기없이 유통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품자체에는 표시가 불가능한바 통상 영업점의 店頭에 제조회사명을, 주유기에 취급유종을 표시하고 있다.

주유소의 複數去來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통상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점두에 표시된 정유사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복수거래가 허용되어 타사제품이 공급되는 실정에서는 표시정유사의 제품과 다른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품질의 差別化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최근 類似揮發油의 범람과 관련하여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상 한계가 있으며 精油社가 그 생산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일부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1월부터 정유사별로 품질관리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유사의 자율검사실시는 복수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石油製品이 다른 工產品에 비하여 製品差別化가 적다고 할지라도 정유사소속 그룹기업의 임직원이나 기타 지역적 연고나 개인적 취향 등으로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소비자의 信賴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유소업계의 경쟁이익의 향유도 중요하지만 값이 싸면 아무제품이나 선호한다는 것은 값만 사면 類似揮發油도 좋다는思考로까지 발전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2) 關聯業界的 입장 및 검토의견

精油社 및 대리점의 경우는 일부 유통망확보가 미흡한後發精油社를 제외하고는 상표표시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注油所業界的 경우 상표표시제도의 확립은 공급계약기간중 타사제품의 취급이 금지되어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및 계약대리점의 판매행위에 기속되지 아니할 수 없고 현재 경쟁이익의 향유로 저마진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 있는바, 이의 상실로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및 精油社間의 製品交換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상표표시제도의 실시는 사실상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유통단계에 있어서의 경쟁이익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지 아니하고, 유통단계 内에서만 향유되는 반면 정유사의 판매비용증대를 가져와 가격상승요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부담을加重시키게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유소의 경영개선은 협회관리강화를 통한 판매물량의 증대나 경영확대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복수거래로 해결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또한 제품교환문제는 정유사가 제품인수시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을 부담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유소단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함께 요구가 증대되는 품질보장 및 안전관리의 문제는 生產者나 유통단계내에서의 어떠한

문제점해소를 위한 이유만으로는 거부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補完策의 강구와 함께 同 제도의 법제화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맷는말

流通市場의 내부에는 이밖에도 代理店기능의 再定立, 뉴混合油나 航空油등 특수유의 유통문제, 精油社注油所間의 직거래 허용문제, 가격 자율화와 적정마진의 보장,

농기계용 면세유의 유통체계개선등 검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인내와 대화와 양보하는 자세로 얹힌 실꾸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보다 나은 先進經濟社會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稿에서의 견해는 石油行政에 관여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의견으로 動力資源部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海外石油動向□

IEA의 최근 石油生產보고서

IEA의 최근 石油生產 보고서 : 在庫增加勢

IEA가 最近 發刊한 2月末 石油市場 報告書에 따르면, OPEC의 2月 原油生產量은 1,740萬b/d로 前月對比 40萬b/d 증가했으며 自由世界의 2月 石油供給은 4,740 萬b/d로 前月對比 20萬b/d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同 報告書는 OPEC 諸國의 88. 1. 1 基準總 陸上石油在庫를 종전 報告書보다 200만톤 높은 455.7百萬톤으로 上向調整했다. 또한 同 報告書는 產油國의 原油在庫가 增加했으며 사우디와 이란은 數隻의 腹커를 용선, 未販賣分을 海上在庫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PEC 產油量 현황

(단위 : 만B/D)

國 別	1988. 2	1988. 1	1987年平均	配定쿼터
사우디아라비아	420	400	400	434.4
이 란	200	200	230	236.9
이 라 크	240	240	210	—
U A E	110	100	150	94.8
쿠 웨 이 트	110	120	110	99.6
(중 립 지 대)	20	20	40	—
카 타 르	30	40	30	29.9
나 이 지 리 아	130	110	130	130.1
리 비 아	100	90	100	99.6
알 제 리	70	70	70	66.7
가 봉	20	20	20	15.9
베 네 수 엘 라	160	160	160	157.1
에 콰 도 르	20	20	20	22.1
인 도 네 시 아	120	120	120	119.0
OPEC原油合計	1,740	1,700	1,760	1,506
OPEC의 N G L	170	170	170	—
總 計	1,910	1,870	1,930	1,506